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910호 2012. 8. 10.(금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 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 서구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
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2년 8월 10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91호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센터장
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